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나. 의안번호 : 제297호

다. 발의일자 : 2018. 12. 21

라. 회부일자 : 2018. 12. 28

2. 제 안 사 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규정함(제2조제4항 신설)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제2조의3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제4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 위원회는 18명(당연직 2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남성 위원은 9명으로 5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위원 조정은 필요하지 않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소계	남성	여성
18명	2명	16명(100%)	9명(56.3%)	7명(43.7%)

○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제8조의2)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제4호)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의2 중 ‘위촉 해제’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종전에는 ‘해촉(解囑)’을 ‘위촉 해제’로 썼지만,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2017년 12월 개정(8판)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분쟁대상자가 신청한 안건을 “사건”으로 명칭하고 있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순번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사건번호[1)]”라 쓰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도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의3 조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개 정	수 정	비 고
위촉 해제	해촉	안 제2조의2
해당 심의·자문 ～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	제2조의3제1항
해당 안건의 ～	해당 사건의 ～	제2조의3제2항

1) 예)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1

[참고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0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